

기초연구사업 내 글로벌협력연구지원 관련 Q&A

(기초연구기획팀, 2024.1.26.)

<< 질문 목차 >>

구 분	연번	질문
공통사항	1	신청요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 유형
	2	국제공동연구 유형을 '연구과제 참여 및 인력교류'로 선택할 경우 (계획서 4번 항목), 수행방법 작성
	3	국제공동연구 평가
	4	글로벌형 과제 신청 조건
	5	국제공동연구 수행 방법에 따른 국외연구자 참여연구원 등록
	6	국외연구자의 소속기관(국외기관)에 과제참여사실 알림 및 승인
	7	국외(상대국) 선택 시 국가 제한, 국외(상대국) 연구자의 참여율 제한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
	9	글로벌 협력연구 신청 시 연구비 지급
	10	해외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11	글로벌 협력연구 신청 시 증빙서류
	12	국제공동연구 국외(상대국) 연구자의 변경 가능 여부
	13	국외(상대국) 연구자의 회원가입 및 참여연구원 등록
	14	국제공동연구의 성과 소유
중견 유형1 및 우수신진연구	15	중견 유형1, 우수신진연구 중 글로벌 협력과제로 신청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필수 계상여부
	16	중견 유형1 및 우수신진연구 글로벌 협력 시 추가 지원
	17	중견 유형1 및 우수신진연구 글로벌 협력과제 선정
	18	글로벌 협력연구 신청 시 연구비 지급

1 공통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매뉴얼, 신청요강 등을 바탕으로 한 안내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매뉴얼 개정 시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함

□ [질문1] 신청요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 유형

Q. 신청요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 유형*을 2개 이상 수행해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거나, 국제협력 관련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나요?

* 연구과제 참여 및 인력교류, 초청/방문연구, 연구시설·장비 활용 등

A. 아닙니다. 국제공동연구는 다양한 유형 중에 1개 이상을 자율적으로 연구에 필요하신 항목을 선택하여 추진하시면 됩니다. 해외연구자의 공동연구원 참여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추진할 국제공동연구의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제협력 관련 별도 평가항목은 따로 없으며,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연구자의 우수성」 항목 등에서 해당 평가항목에 있어서 국제협력 계획의 적합성 등이 평가될 예정으로 국제공동연구 유형을 많이 수행한다고 해서 평가에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설명자료 발체 (2023. 11. 15.(수))

- 연구자들은 국내외 공동학술대회, 공동 심포지움, 상호 방문, 인력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 유형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R&D사업이 획일적으로 해외에 연구비를 주거나 새롭게 해외 인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글로벌 기초연구사업은 기존의 기초연구과제와 전혀 다른 형태의 연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구에 꼭 필요한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 [질문2] 국제공동연구 유형을 '연구과제 참여 및 인력교류'로 선택할 경우(계획서 4번 항목), 수행 방법 작성

Q. 국제공동연구 유형을 '연구과제 참여 및 인력교류'로 선택할 경우, 수행 방법 5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하나요?

A. 아니오. 제시된 수행 방법 중 1개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 [질문3] 국제공동연구 평가

Q. 글로벌형 과제의 평가 시 우수성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계획서에 작성한 글로벌 내용이 선정 여부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기초연구사업은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견 유형2(글로벌), 리더연구의 경우 국제협력연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질문4] 글로벌형 과제 신청 조건

Q. 국외(상대국) 연구 대상자의 소속 해외기관에서 과제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글로벌형 과제에 신청 불가능한 것인가요?

A. 국외기관 소속 연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만 글로벌형을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공동연구 유형에는 “① 연구과제 참여 및 인력교류, ② 초청/방문연구, ③ 연구시설·장비 활용, ④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⑤공동연구센터 설치/운영, ⑥ 추가 제시”와 같은 여러 종류의 유형이 있어 다양한 형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상대국) 연구 대상자가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된 해외기관에서 연구과제 참여 관련 승인을 받아야만 참여 가능합니다.

□ [질문5] 국제공동연구 수행 방법에 따른 국외연구자 참여연구원 등록

Q. 국제공동연구 유형을 연구시설·장비 활용으로 선택하고 수행 방법을 해외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특수 또는 고가장비 활용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도 해외연구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외연구자가 연구에 반드시 참여하지 않아도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참여연구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문6] 국외연구자의 소속기관(국외기관)에 과제참여사실 알림 및 승인

Q.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 그리고 재단에 제출해야 하나요?

A.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재단에 제출도 불필요합니다.
다만, 국외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타 과제 참여 사실을 알고 있으며 승인하였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주관기관에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7] 국외(상대국) 선택 시 국가 제한, 국외(상대국) 연구자의 참여율 제한

Q. 국외(상대국) 선택 시 국가 제한 및 국외(상대국) 연구자의 별도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A. 국가제한 및 별도 참여율 제한은 없습니다.
국외(상대국) 연구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이 가능하면 됩니다.
IRIS 온라인 접수 시에는 국제협력 탭에서 해당국가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 [질문8]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

Q.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집행하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과제 협약이후 공문으로 승인 신청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 주관연구기관 간의 계약서가 있어야만 승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승인 이후 간접비 재계산 등의 협약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간접비 계산 시 수정 직접비에서 제외).

Q.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재료비, 인건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접수 시점에서 해외 연구자와 연구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두로 협의 후 연구비 편성과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A. 가능합니다. 단,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또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이체 또는 계정 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질문9] 글로벌 협력연구 신청 시 연구비 지급

Q. 국제공동연구(글로벌협력) 선정 시 연구비는 참여연구자(공동 포함)로 입력한 국외(상대국) 연구자에게도 지급 되나요?

A. 아닙니다. 연구개발비는 모두 주관연구기관으로 지급됩니다.

[질문10] 해외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Q. 해외 연구자의 인건비를 참여인력 소속기관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그리고 참여기간만큼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나요?

A. 참여인력 소속기관으로의 지급 가능 여부는 주관기관 자체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건비의 경우 한 번에 지급이 불가합니다.

[질문11] 글로벌 협력 연구 신청 시 증빙서류

Q. 글로벌 협력연구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증빙 또는 서류가 있습니까?

A. 글로벌 협력연구 신청을 위해 과제 접수 시 별도로 제출하셔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시는 경우는 협약 시 주관연구

개발기관과 외국기관 간 글로벌 협력연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 [질문12] 국제공동연구 국외(상대국) 연구자의 변경 가능 여부

Q. 과제 접수 당시 입력한 국외(상대국) 연구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붙임2(별첨2(계획서 서식))에 국외(상대국) 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 범위와 역할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가 시 계획서에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내용과 방법의 적합성(공동연구) 및 국내외 연구자(연구팀)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계획서의 4-(2)번(국외(상대국) 연구자의 인적사항 등), 4-(3)번(국제공동연구 수행자 간 연구범위 및 역할분담)에 작성하신 국제 공동연구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 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 국제공동연구의 연구수행 역량이 충분한 연구자로 재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질문13] 국외(상대국) 연구자의 회원가입 및 참여연구자 등록

Q. 국외(상대국) 연구자의 경우 반드시 회원가입 및 참여연구자 등록을 해야 합니까? 관련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A. 해당 과제 참여연구자로서 글로벌 협력 연구를 수행하실 연구자는 반드시 IRIS(<https://www.iris.go.kr>)에 회원가입 후 참여연구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IRIS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IRIS 고객센터(1877-2041)로 문의 바랍니다.

참여연구자로 미등록하신 경우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외 다른 비목의 연구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IRIS 온라인 접수 마감 일시 전까지 국외(상대국) 연구자가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미완료 상태로 연구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채용예정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참여연구자(공동/일반) 연구원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상세 방법은 온라인 접수 매뉴얼 24쪽 참조).

□ [질문14] 국제공동연구의 성과 소유

Q. 국제공동연구의 성과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A. 아래와 같습니다.

- (성과 소유 기본원칙)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되, 해당 연구자로부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 (공동소유) 과제 참여형태, 성과창출 형태 및 기여도 등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3조)

→ 기초연구사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연구개발 기관 외) 공동연구원의 소속기관은 원칙적으로 성과를 소유할 수 없음

- (국제공동연구)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 - 국내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등을 통해 외국 소재 제3자에게 연구 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 등에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중견 유형1 및 우수신진연구

- [질문15] 중견 유형1, 우수신진연구 중 글로벌 협력과제로 신청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필수 계상여부
- Q. 중견연구 유형1 및 우수신진연구의 글로벌 협력 시 추가지원 하는 금액(최대 5천만원)은 반드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사용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질문16] 중견 유형1 및 우수신진연구 글로벌 협력 시 추가 지원
- Q. 중견 유형1 및 우수신진연구 글로벌 협력 시 최대 5천만원 추가 지원이 무슨 의미인가요?
- A. 글로벌 협력 시 최대 5천만원 추가 지원은 연간 연구비 기준 최대 5천만원/년 추가 지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견 유형1 글로벌 과제는 일반과제의 연간 연구비인 최대 2.5억원에 추가로 최대 5천만원/년 지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17] 중견 유형1 및 우수신진연구 글로벌 협력과제 선정
- Q. 중견 유형1 및 우수신진연구 글로벌 협력과제의 경우 전체 선정과제 수의 20% 내외로 선정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20% 내외에 들지 못하면 최종 선정되지 못하는 건가요?
- A. 아닙니다. 글로벌 협력과제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과제로 선정이 될 수 있으나, 신청 연구비에 대한 연구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질문18] 글로벌 협력연구 신청 시 연구비 지급
- Q. 중견연구 유형1 및 우수신진연구의 글로벌 협력과제로 신청 시 추가 지원하는 금액(최대 5천만원)은 해외기관으로 지급되나요?
- A. 아닙니다. 연구개발비는 모두 주관연구기관으로 지급됩니다.